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2004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4. 6

K O T R A
통상전략팀

목 차

1. 최근 국제통상환경	1
2. 2004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14
가. 총 괄 / 14	
나. 국별 동향 / 17	
다. 2004년 상반기 수입규제 특기사항 / 42	
3. 2004년 하반기 수입규제 전망	46
가. 총 괄 / 46	
나. 주요국별 전망 / 47	
□ 첨 부 : 국별/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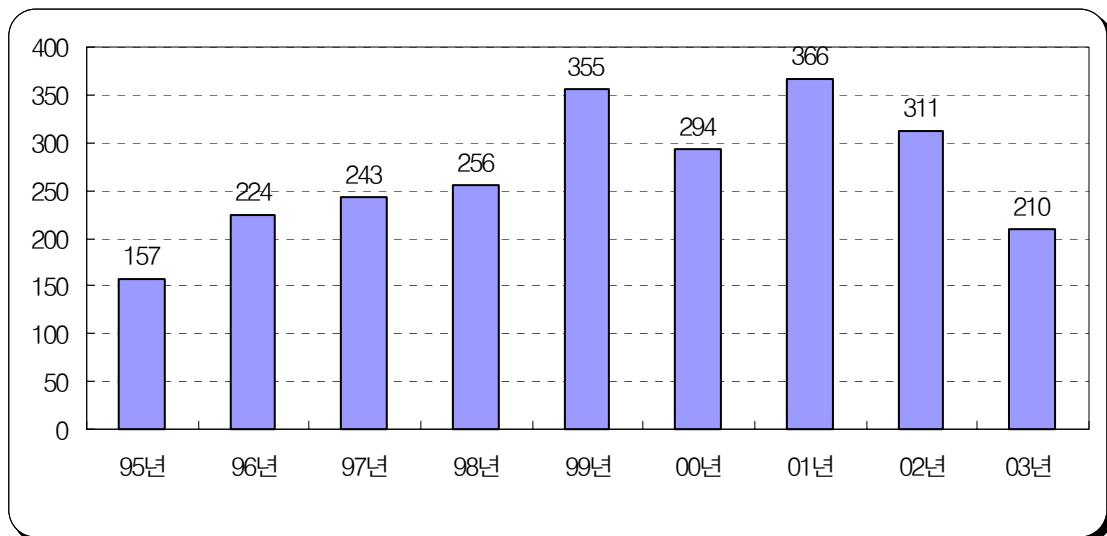
1. 최근 국제통상 환경

WTO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반덤핑)의 빈번한 활용

□ WTO 체제 출범 이후 2003년 12월 말까지 반덤핑 조치 2,416건 기록

- 1995년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 9년간 전체 41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에 의해 총 2,416건의 반덤핑 조사 개시되었으며, 2003년에는 총 210건을 기록하였음.

<세계 반덤핑 제소 현황>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전체 2,416건 중 356건이 중국을 상대로 개시된 조사이며, 한국은 182건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피소됨

□ 반덤핑 조치의 주요 발동국은 인도, 미국, 호주, EU 등이며, 주요 피소국은 중국, 한국, 미국 등으로 나타남.

- 2003년 인도는 46건으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미국(37건), 호주(8건), EU(7건)이 뒤를 이음.
-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총 45건의 규제(조사개시 기준)를 받아 가장 많은 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18건), 한국(16건), 일본(13건)순임.

<주요 반덤핑 조치 발동국 및 피소국 현황>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합 계
세계 전체		157	224	243	256	355	294	366	311	210	2,416
주요 발동국	인도	6	21	13	27	65	41	79	81	46	379
	미국	14	22	15	36	47	47	76	35	37	329
	EU	33	25	41	22	65	32	29	20	7	274
	아르헨	27	22	14	8	23	45	26	14	1	180
	남아공	16	33	23	41	16	21	6	4	6	166
	호주	5	17	42	13	24	15	23	16	8	163
주요 피소국	중국	20	43	33	28	40	43	53	51	45	356
	한국	14	11	15	24	34	22	23	23	16	182
	미국	12	21	15	15	14	13	15	12	18	135
	대만	4	9	16	10	22	16	19	16	11	123
	일본	5	6	12	13	22	9	13	13	13	106
	인니	7	7	9	5	20	13	18	12	8	99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주) 반덤핑 조사개시 기준

- ☐ 2003년 기준, 세계 반덤핑 조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 철강/금속, 플라스틱/고무 등이 주된 규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남.

<2003년 주요 품목별 반덤핑 조치 발동 현황>

품 목	화학제품	철강/금속	플라스틱/고무	제지류	의류/직물	총발동 건수
건 수	61	47	28	20	13	210
비 중	29%	22.4%	13.3%	9.5%	6.2%	80.4%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반덤핑 조사개시 기준)

-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있는 섬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과 같은 전통산업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보호무역 주의적 성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음.

○ 개도국의 반덤핑 조치 활용 비중이 급격히 증가

- 최근 들어 반덤핑 조치 주요 발동국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80년대 후반 까지 전 세계 반덤핑 조치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의 반덤핑 활용 빈도가 꾸준히 감소하여 2003년에는 이들 국가의 반덤핑 조사개시는 총 67건으로 전세계 반덤핑 조치의 31.9%에 그침
- 반면,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개도국들이 최근 들어 반덤핑 조치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 전세계 반덤핑 조치의 68.1%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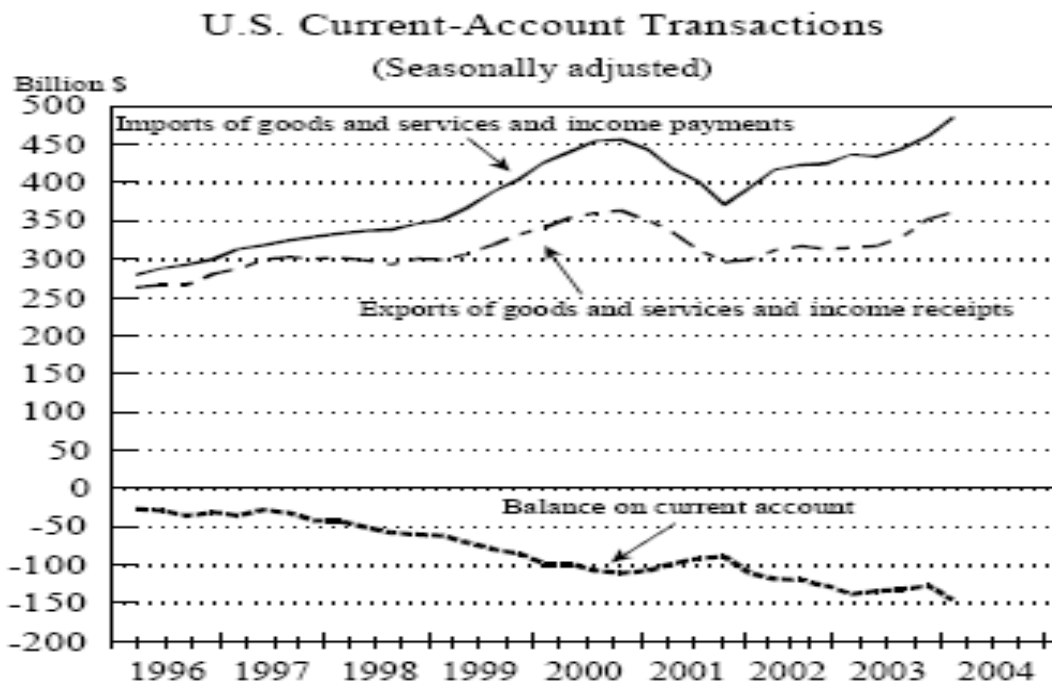
<반덤핑 조사개시의 선진국/개도국 비중 비교>

구 분	80년대 후반	1995~1999	2000	2001	2002	2003
선진국	90% 이상	38.7%	39.9%	42.3%	27.5%	31.9%
개도국	10% 미만	61.3%	60.1%	57.7%	72.5%	68.1%

자료원 :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2003", 1995년 이후는 WTO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사상 최대, 통상압력 강화될 듯

- 최근 경기 회복으로 촉발된 수입증가로 인해 미국의 1·4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5.1%에 해당하는 1,449억불을 기록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2년 4,740억 달러에 이어 2003년에는 5,300억 달러에 육박
 - 이에 따라, 금년 GDP의 4.7%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재정적자와 함께 또다시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하락 압력으로 작용
 - 그러나, 통상적으로 통화가치 절하(depreciation) 효과가 경상수지 개선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J-Curve 효과), 교역국내 상대적인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경기수축효과로 인해 美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므로 실제적으로는 상당기간 무역수지 적자기조가 유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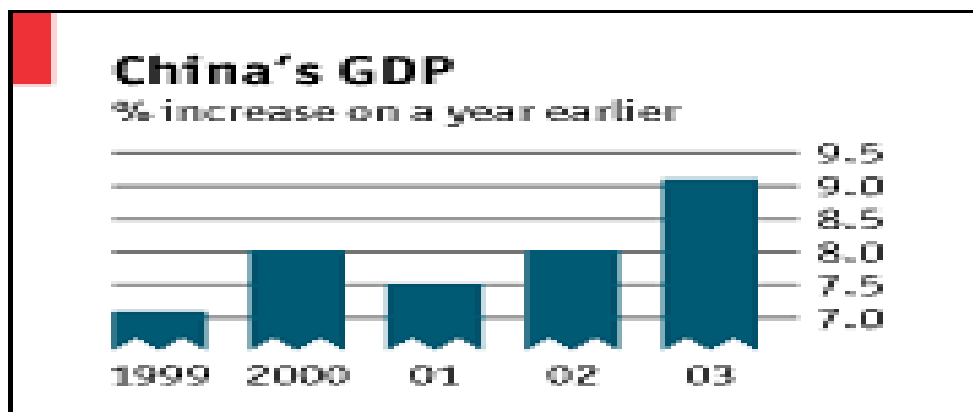


자료원 : 2004. 6. 18일자 BEA New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이러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부시 행정부는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무역수지적자 해결을 위해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특히, 2004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한 보호무역주의가 발로되어, 중국·한국 등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임.
-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가 내국산 반도체제품 부가세 환급조치를 통해 사실상 중국내 제조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제소를 단행 (현재는 양국간 협의절차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짐.)
- 이어, 美민주당 의원들은 2004년 3월 31일자 공개서한을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일본, EU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고발하며 WTO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도 무역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01년 종료된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부시행정부 를 압박
- 최근 美상무부가 발표한 “Manufacturing in America” 라는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불공정 무역관행과 무역왜곡 효과를 유발하는 조치에 대해 강력한 대처 요구
- 미국산 제품의 수출에 저해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금지 보조금 지급의 중단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WTO 내 분쟁해결기구 또는 다른 중재기구를 활용함으로써 불공정 무역관행을 철폐하도록 권고

중국의 긴축정책

-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4월 말 일부 업종의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긴축정책을 발표
 -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부동산, 자동차 등 5대 과열 업종에 대한 투자 적격성 재심사 및 대출 통제에 들어감.
 - 이자율 인상을 점치는 시각도 있으나 중앙은행은 현재까지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
- 중국의 긴축정책 발표에 세계 경제 동반 위축 우려
 - 최근 3년간 중국은 구매력 기준 (PPP) 세계 경제 성장의 1/3 가량을 기여하며, 작년에는 9.7%의 GDP 성장률을 기록



자료원 : Economist 2004. 5. 13

- 이와 같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2003년 중국의 수입 증가율도 40%에 이름
 - 지난 3년간 중국의 전체 생산량 증가율은 50%에 육박하며, 내수 부진 및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인해 침체일로를 겪고 있던 타국 경제에 활기 부여
 - 특히, 시멘트, 원유, 철강 등 원자재 부문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늦춰질 경우 이들 원자재 가격이 급강하여 러시아, 브라질, 호주 등의 원자재 수출국에 피해 우려

□ 인접 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피해 예상

- 중국은 작년 기준,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의 총 수출 성장에 평균 50% 이상의 기여를 하는 등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
- 일본의 경우, 대중 수출 및 수출산업과 연관된 자본 지출이 작년 총 GDP 성장의 1/3을 기여
- 따라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수입수요가 줄어들 경우 인접 아시아 국가들의 만성적인 내수소비 부진과 결부되어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동반 하락시킬 가능성 상존

□ 미국, EU로의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미국과 EU에서는 상기 아시아 국가들보다 중국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착륙시 파급효과가 작을 것으로 전망되나, 두 국가에서 모두 중국이 주요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중국은 NAFTA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할 경우, 미국의 제 3위 수출국(NAFTA 체결국 포함시 제5위)으로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美 수출 상위 5개국의 수출 비중 > (단위: %)

국명	2002	2003	2004(1-4월)
캐나다	23.37	24.07	23.03
멕시코	13.74	13.06	13.33
일본	7.33	7.28	6.80
영국	5.11	4.92	4.58
중국	2.79	3.71	4.43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EU 회원국간 역내 무역을 제외할 경우, 중국은 EU의 제 3위 수출시장 (2002년 기준)으로 전체 EU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대
- 특히 미국은 과열된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반전된다면, 더 이상 위안화 안정을 위해 美 재무성 발행 국채인 T-Bill을 구입할 필요가 사라져 이제까지 미국의 예산 보충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해주던 자금원이 사라지게 되므로 난관에 봉착
-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긴축정책(twin tightening)을 실시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이 고착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5%에 이르고 있으나 이자율을 위협할 정도로 낮은 수준인 1.25%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시키고,
- 이와 동시에 중국 경제가 급랭하게 될 경우, 세계 경제는 새로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 상존

섬유쿼터제 전면 폐지

□ 섬유쿼터제 2005년 1월 1일 부로 전면 폐지 예정

- WTO 섬유협정(ATC)이 종료됨에 따라 각국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던 섬유쿼터제를 사실상 올해 말까지 완전 폐지해야 함.
- 섬유쿼터제가 전면적으로 폐지될 경우 국가별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 EU 등은 아시아 개도국의 섬유 급증으로 인해 피해가 불가피한 반면,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 (World Bank)
 - 미국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미국 섬유시장 개방영향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대형 의류회사 및 유통업체에게 선택된 공급자 (supplier of choice)가 될 것으로 예측
-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섬유업계에서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섬유 쿼터제 폐지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기 시작
 - 유럽 각국의 섬유산업협회들이 ‘이스탄불 선언(2004. 3. 4)에 잇달아 동참 서명함으로써 섬유쿼터 폐지시기를 2007. 12. 31일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미국 섬유업계는 섬유쿼터제가 폐지될 경우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 및 터키의 섬유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므로 테러 위험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을 토대로 섬유쿼터제 폐지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의사를 부시 행정부에 전달
- 그러나, 섬유협정이 WTO라는 다자간의 협상채널을 통해 이뤄진 국제 협정이고 10년(1995 - 2004)이라는 충분한 이행기간을 두었으므로 폐지시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

□ 쿼터제 폐지 때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조치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협상시 섬유쿼터제가 종료될 경우 중국산 섬유류 수입급증 대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중국산 섬유류에 대해 한시적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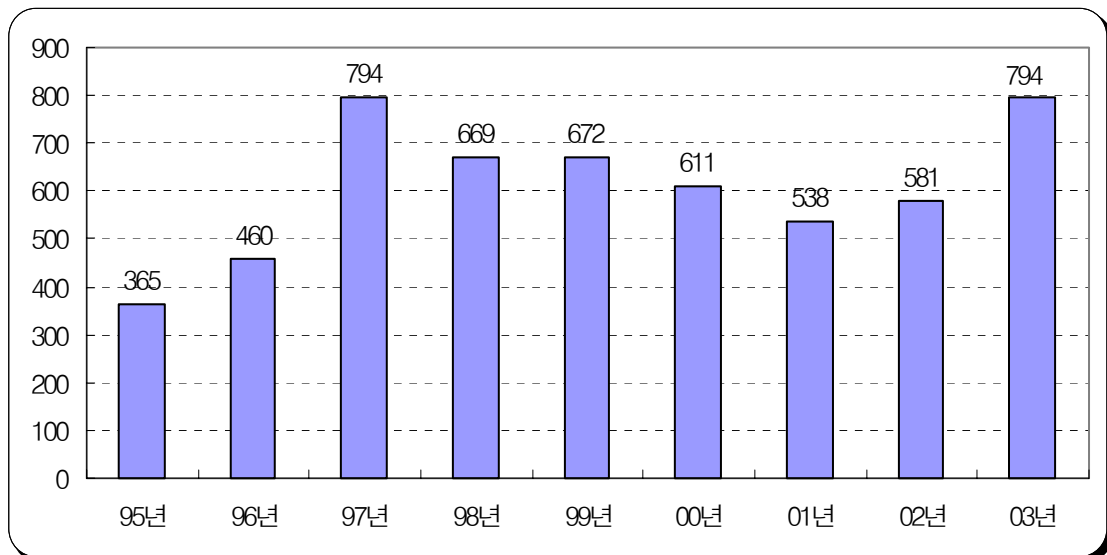
- 이에 따라, EU 등의 다른 주요 섬유수입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 방법으로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도입 증가

- WTO 출범이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건위생이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주의적 기술장벽의 도입이 증가
 - 기술장벽 도입은 WTO체제 출범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97년의 794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드는 듯 하였으나, 200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03년도에는 총 794건으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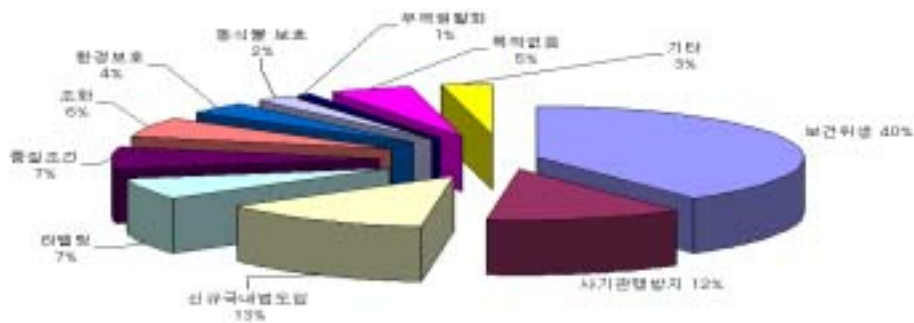
<세계 기술장벽 도입 현황>



자료원 : TBT Committee, WTO

주) TBT 통보건수 기준

- WTO에 통보된 기술장벽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2003년 기준 약 40%)



자료원 : “Ninth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TBT Committee, WTO

○ WTO 출범직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대부분의 TBT 통보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TBT가 사용되고 있음.

- WTO가 출범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총 통보된 TBT 건수를 살펴보면, 네덜란드(589건) • 일본(343건) 등 대체로 선진국이 상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 아르헨티나, 브라질등 일부 중남미 개도국은 2003년에 통보된 TBT 건수 급증으로 총 통보 건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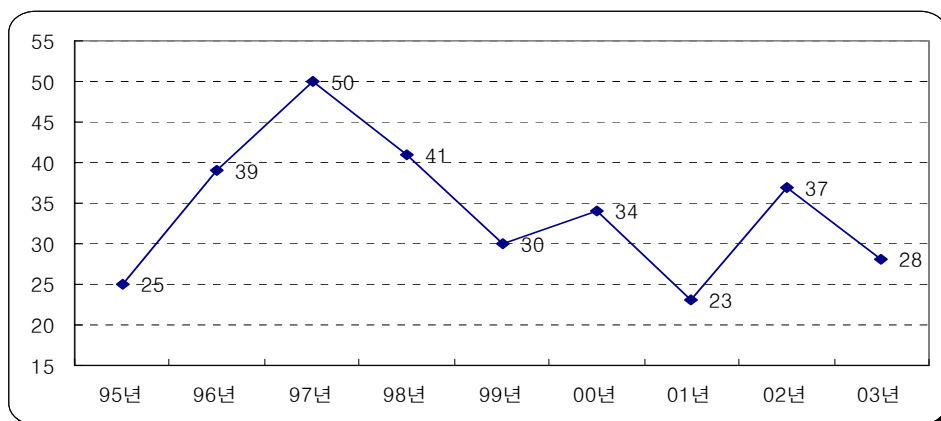
- 2003년에만 통보된 TBT 건수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선진국들은 이전과 비교하여 통보 건수가 현저히 감소한 반면, 아르헨티나 (83건), 브라질 (71건) 등의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TBT 통보 건수가 급증

-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국내 산업 보호가 어려워지자, 개도국들이 그 대체안으로 기술무역장벽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분석 가능

국가간 무역 분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 최근 들어 미국 및 EU를 중심으로 자국 산업 보호, 무역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등이 강화되면서, 국가간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 지난 3월 EU는 미국이 WTO 협정위반으로 판결된 FSC(해외판매 법인법)/ ETI(역외소득법)를 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복조치를 부과하였으며, 버드수정법 미철폐에 대한 보복조치도 검토 중
 - 또한, 만성적인 대중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지난 3월 중국이 국내 반도체생산업체에게만 증치세(부가가치세에 해당)의 일부분을 환급하던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대중 통상압력 수위를 높임.
-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국가간 무역 분쟁이 2003년 말 기준 304건에 이르러, GATT체제 50년 동안에 회부된 무역 분쟁건수(300여건)를 단 8년 만에 넘어섬
 - 이러한 국가간 무역 분쟁 증가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WTO체제 출범이후 무역 분쟁 추이>



자료원 : Dispute Settlement Body, WTO

2. 2004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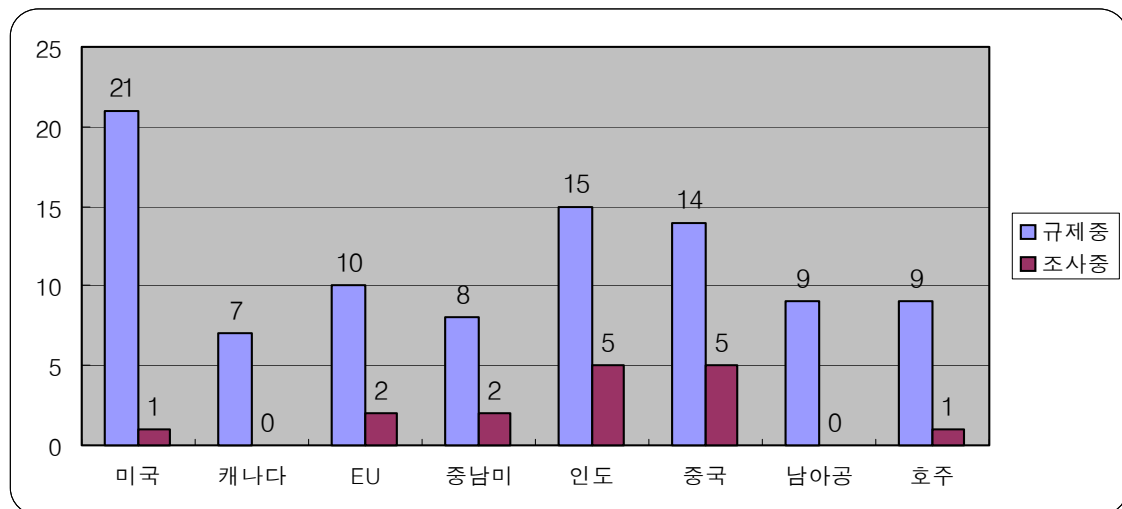
가. 총괄

□ 2004년 7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20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총 131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131건의 수입규제 중 규제중인 것은 106건이며, 조사중(최종판정 이전까지는 모두 조사중으로 집계)은 25건임.

□ 국가별로는 미국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건, 중국 19건, EU 12건, 호주 10건, 남아공 9건 순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중남미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주엘라 포함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21건으로 가장 많고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2건, 세이프가드 3건 등임.

- 반덤핑 규제가 전체 수입규제의 대부분(92%)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우리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 40건, 섬유류 21건, 전기·전자 12건, 기타 14건 등임.

- 석유화학제품은 인도(15건), 중국(12건), 철강제품은 미국(17건), 캐나다(7건), 섬유류는 중남미(7건), 터키(5건), 전기·전자는 EU(4건), 인도(2건)에서 주로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음.

□ 2004년 상반기 신규 피소 건은 총 11건임.

[2004년도 신규 피소 현황]

연번	조사개시일	피 소 품 목	제소국가	내 용
1	1. 28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강력사	EU	반덤핑
2	2 . 7	금속 드리사	터키	반덤핑
3	2. 23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	아르헨티나	반덤핑
4	3. 3	배관용 탄소 강관	미국	반덤핑
5	3월중	ERW	호주	반덤핑
6	3. 31	콜판지	중국	반덤핑
7	5. 12	비스페놀 A	중국	반덤핑
8	5. 28	합성고무	EU	반덤핑
9	6. 4	백설탕	러시아	세이프가드
10	6. 11	무수말레산	말레이시아	반덤핑
11	6. 20	아질산염	태국	반덤핑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3건, 철강 2건, 섬유류 3건, 기타 3건이며, 피소 형태는 모두 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1건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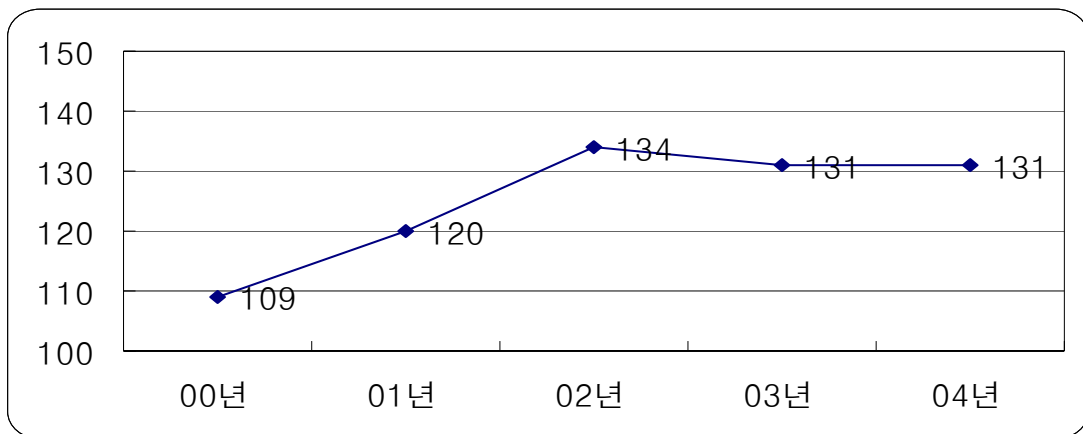
□ 2004년 7월 기준 부과된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2003년 말 기준 138건 보다 7건 감소하였음. 그러나, 이는 對韓 통상압력의 완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함.

○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 '03년 12월 말 집계된(조사개시 기준) 세이프가드 조치는 11건이었음에 반해, '04년 7월 현재 발효 중(조사개시 포함)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3건에 불과하여 대폭 감소(8건 감소)된 양상을 보임.

- 이는 작년 중 이미 철회되었으나 국내에서 미파악된 세이프가드 조치 7건과(미국 2건, 캐나다 1건, 인도 4건), EU확대로 인한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폴란드 1건), 기한종료에 의한 자동소멸 (아르헨티나 1건)에 의한 것임.
- 따라서, 2003년 중 철회되었으나 국내에서 미파악된 세이프가드 조치로 2003년 하반기 수입규제 건수를 조정할 경우, 2004년 7월 현재 對韓 수입규제는 2003년 하반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임.

[연도별 對韓 수입규제 추이]



주 : 2004년은 상반기 기준

- 중국, 인도 등의 반덤핑 주요 발동국들이 기존에 개시된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후속조치(예비판정 및 확정관세)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임.
- 중국 및 인도에서는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품목이 많기 때문에 기착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많았음.
- 기한 만료 및 무혐의 판정으로 종결된 수입규제 조치가 11건에 달함.

[2004년도 상반기 종료된 수입규제조치]

연번	제소국가	피 소 품 목	종료시기	종료사유
1	대만	강선	'03. 12월	기한만료
2	호주	PS Resin	'03. 12월	기한만료
3	태국	H형강	'04. 1월	제소철회
4	미국	열전사 리본	'04. 4월	무혐의
5	폴란드	철강	'04. 5월	EU 확대
6	인도	NBR	'04 상반기	무혐의
7	인도	옥소알콜	'04 상반기	기한만료
8	인도	Copper Clad Laminates	'04 상반기	기한만료
9	인도	폴리스티렌	'04. 6월	기한만료
10	브라질	PET Resin	'04. 6월	미소물량
11	아르헨티나	소형 모터사이클 및 스쿠터	'04. 6월	기한만료

나. 국별 동향

[미 국]

□ 2004년 7월 현재 총 2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6건(조사중 1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1건
- 품목별로는 철강 16건, 석유화학 3건, 전기·전자 1건, 섬유류 1건, 기타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규제일자	내 용	품 목
05/23/1986	반덤핑	Malleable cast iron pipe fittings
01/20/1987	반덤핑/ 상계관세	Top-of-the-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
07/10/1990	반덤핑	Industrial nitrocellulose
06/05/1991	반덤핑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film
11/02/1992	반덤핑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12/30/1992	반덤핑	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02/23/1993	반덤핑	Stainless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08/17/1993	상계관세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08/19/1993	반덤핑	
08/11/1995	반덤핑	Oil country tubular goods
09/15/1998	반덤핑	Stainless steel wire rod
05/21/1999	반덤핑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07/27/1999	반덤핑	Stainless steel sheet & strip
08/06/1999	상계관세	

규제일자	내 용	품 목
02/10/2000	반덤핑/ 상계관세	Carbon steel plate
05/25/2000	반덤핑	Polyester staple fiber
08/14/2000	상계관세	Structural steel beams
08/18/2000	반덤핑	
05/18/2001	반덤핑	Stainless steel angle
09/07/2001	반덤핑	Steel concrete reinforcing bar
03/07/2002	반덤핑	Stainless steel bar
08/11/2003	상계관세	D-RAM
10/01/2003	반덤핑	Polyvinyl Alcohol
1/28/2004	반덤핑	PC 강선
04/19/2004 (예비판정)	반덤핑	Certain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배관용탄소강관)

□ PC 강선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2004년 1월 2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여 피소업체인 고려제강, 동일제강에 모두 54.19%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

□ 2004년도 상반기에 신규 제소 당한 품목은 배관용탄소강관 1개 품목이며, 열전사 리본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는 2004. 4. 5일부로 종료

[2003년 신규 제소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판정일
배관용탄소강관	7306.10.10 7306.10.50	반덤핑	'04.3.3	'03.4.19 (ITC예비판정)

- 동 품목은 2003년 3월 종료된 세이프가드 부과 대상이었으며, 제소 관련 피소업체는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 주식회사 휴스틸 등임.

□ 부시행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로 인해 개별적 철강관련 업체의 제소가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그 건수 자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음.

□ 전반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등 경기가 회복되고 산업생산이 활발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급속한 수입규제 건수 증가 등의 현상은 보이지 않음.

[캐나다]

□ 2004년 7월 현재 반덤핑 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데, 모두 철강 제품에 대한 것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 고
탄소강관	반덤핑	'82.9.14	'83.3.30	'84.6.27	'90, '95, '00년 각각 규제연장
아연도강관	반덤핑	'93.9. 7	'94.3.31	'94.7.9	'00. 1. 20일 규제연장
철 근	반덤핑	'99.6.16	'99.9.14	'00.1.12	
스텐레스봉강	반덤핑	'98.12.3	'99.2.18	'99.6.18	
후 판	반덤핑	'93.10.18	'94. 1.17	'94. 5.17	
구조용강관	반덤핑	'03.5.21	'03. 8.19	'03. 11.17	
스텐레스강선	반덤핑	'03.11.21	'04. 4.2	'04. 7. 2	7월말 CITT서 덤핑을발표예정

□ 2002년 7월 5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미국산을 포함한 철강 5개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린 후,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에 대한 최종판정을 유보해왔으나, 2003년 10월 동 조치를 발동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

- 제소 품목 5개중 4개에 미국이 연루되어 있는데, 미국이 NAFTA 역내국에는 철강세이프가드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도 미국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시키지 않기로 결정

□ 2004년 들어 신규 제소된 품목은 없으나, 지난 4월 28일 한국산 철근에 대한 재심 개시

- 2002.1.12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받은 한국, 쿠바, 터키와 2001.6.1 긍정판정을 받은 일본, 라트비아, 몰도바 공화국, 폴란드, 대만, 우크라이나 철근에 대해 덤핑 재산정을 위한 재심 개시
- 동 건에 연루된 현대상사, 동국철강, 인천제철은 정상가격을 제출하지 않아 현 수출가에 반덤핑 관세 27%를 더한 가격을 구성가격(구성 정상가격)으로 사용될 예정

□ 한국산 스테인레스 강선(Stainless Steel Wire)에 대한 산업피해 긍정판정

- 2003년 11월 21일 대만, 인도, 스위스, 미국과 함께 제소되었는데, 피소된 한국기업은 정상가격을 제출하지 않아 108%의 높은 잠정 관세가 부과됨.
- 관세청 최종판정은 올해 6월 30일 경에 있을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에서도 7월 30일 경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

□ 캐나다는 무역에 있어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이지만, 유독 자국내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성향을 짙게 나타내고 있음.

- 캐나다 전체 수입규제의 약 75%가 철강제품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캐나다의 철강산업 보호정책을 반증하고 있음.

- 또한, 현지 철강 업체 적자폭 증대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Steel Working Group”이라는 자국 산업 보호주의 로비 그룹을 형성하여 對 정부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강제품 덤핑 제소는 증가할 전망이다.

[EU]

□ 2004년 7월 현재 반덤핑 11건(조사중 2건), 상계관세 1건 등 총 1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석유화학 3건, 전기·전자 4건, 섬유 2건, 기타 1건 등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3.5" 플로피디스크	반덤핑	'92.9.18	'94.9.10	관세부과 기한연장
칼라TV	반덤핑	'92.11.25	'95.3.27	관세부과 기한연장
칼라TV 브라운관	반덤핑	'99.9월	'00.10.20	
주철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99.5.29	'00.8.18	
PET칩	반덤핑	'99.11.6	'00.11.30	'03. 5월 재심 시작 '04. 3월 기업 실사

품 목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전자저울	반덤핑	'99.9.16	'00.11.30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99.10.7	'00.12.28	'03. 12월 재심 시작 '04. 1월 샘플링기업선정
PET 필름	반덤핑	'00.5.27	'01.8.23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01.6.1	'02.8.24	'03.5월 관세율 인하
D-RAM	상계관세	'02.7.25	'03.8.11	관세율 : 34.8%
폴리에스테르장섬유 강력사	반덤핑	'04.1.28	-	-
합성고무	반덤핑	'04.5.28	-	-

□ 2004년 상반기에 신규로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품목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강력사와 합성고무임.

- 폴리에스테르장섬유 강력사는 2003년 12월 15일 덤핑혐의로 제소되어 2004년 1월 28일자로 조사가 개시된 상태
- 합성고무는 2004년 4월 13일 덤핑혐의로 제소되어 5월 28일자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피소업체는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 등 2개 업체임.

□ 2004년 2월 철강 품목군에 대한 수입감시제도 철회

-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조치 폐지에 따라 2003년 12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폐지한 것에 이은 사후 조치로서, 금년 2월 14개 철강품목군에 대한 수입감시제도를 철회하였음.
- 단, 이는 한국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역외수입품 모두에 적용

[터 키]

□ 2004년 7월 현재 5개의 섬유제품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과거 5년간 섬유류가 전체 對터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달함.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반덤핑관세율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5402.43	반덤핑	'98.1.27	'99.12.6	7.06%~21.2%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5503.20	반덤핑	'99.3.4	'00.3.13	11.9%~24.6%
폴리에스터 직조섬유사	5402.33	반덤핑	'99.3.4	'00. 6월	33.7%
폴리에스터 장섬유 직물	5407 일부	반덤핑	'99.11.1	'02.2.15	3.51%~40%
금속 드리사	5605	반덤핑	'04.2.7	-	-

□ 2004년 상반기 중 신규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품목은 금속드리사 1건임.

□ 한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사에 대한 반덤핑 규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04년 11월 30일로 반덤핑 규제조치가 만료되는 한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사에 대해 현지 제조업체는 동조치 만료시 수입물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치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음.
- 반면, 동품목의 수입업체들은 이와 같은 반덤핑 규제 조치 연장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현지 제조업체의 로비력에 밀려 반덤핑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 세관 통관 심사 강화를 통한 수입규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非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당수의 수입품에 대해 CE마크 및 TSE(터키표준협회) 테스트를 의무화하여 수입품이 1개월 이상 통관되지 못하는 사태 초래
- 특히, 한국산을 포함한 아시아 제품은 통관심사 과정에서 Red Line이라는 이중 검사대를 설치하여 통관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짐.

□ 수입규제 세부 내역을 제대로 공포하지 않고 세관에서 자의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변경된 규제 내용을 통관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속출

[멕시코]

□ 2004년 7월 현재 2개 섬유제품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반덤핑	'92.3.19	'93.1.21	'93.8.19	'99.7.29일에 반덤핑 규제 연장, '03.8.20일 재심개시
폴리에스터 합성 필라멘트	반덤핑	'99.12.22	'00.10.3	'01.6.22	반덤핑 관세부과 (16.03%)

□ 2004년 들어 우리 상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는 없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섬유류, 잡화, 신발류 등의 밀수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아르헨티나]

□ 2004년 7월 현재 반덤핑 5건(조사중 1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섬유류 3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냉연강판(CRS)	반덤핑	'01.7.19	'02.4.30	'03.1.8	반덤핑 관세부과 (60.46%)
아연철판 (Galvanized Steel Sheet)	반덤핑	'02.5.30	'02.12.16	'03.5.23	반덤핑 관세부과 (49.67%)
폴리에스터 단섬유	반덤핑	'01.5.21	'01.11.8	'02.11.12	반덤핑 관세부과 (US\$0.85/kg)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염색직물	반덤핑	'99.12.2	'00.11.23	'01.8.7	반덤핑 관세부과 (US\$8.73/kg)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	반덤핑	'04.2.23	-	-	-

□ 2004년 2월,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 수출 최대 효자품목이었던 폴리에스터 직물에 대해 신규 제소가 이루어졌음.

- 덤핑 제소 대상은 HS 5407류 4개 직물로서, 지난해 대 아르헨 수출이 크게 늘어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이 주요 대상임.
- 아르헨 경제생산부 상공중기처 상역실에서 책정한 한국산 직물에 대한 덤핑마진율은 160.75 - 176.89%로서 다른 피제소국가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2001년 7월 소형 모터사이클 및 스쿠터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었던 세이프가드 조치는 금년 6월 21일부로 종료되었음.

[브라질]

- 2004년 7월 현재 반덤핑 2건(조사중 1건),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3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데, 품목별로는 섬유류 2건, 석유화학 제품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조치내용
나일론 6번사	5402.31	반덤핑	'00.1.12	'01.6.28	반덤핑관세 (5.2%~52.2%)
폴리에스터직물	5407.61 5407.52	세이프가드	'02.10월	'03.1.27	수출자율규제 (쿼터제)

- 지난해 11월 개시된 한국산 PET 레진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지난 7월 7일자로 종결되었음.

- 한국산은 3% 미만 미소물량 기준을 적용하여 반덤핑 조사 무혐의 처리기로 판정

- 브라질 정부는 2002. 10월 우리나라 및 대만산 폴리에스터직물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을 통보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출자율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

- 수출자율규제는 쿼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3년에 15,607톤이며, 2004년에는 16,855톤임.

- 최근 브라질 경기회복 및 수출호조현상 지속으로 브라질 업체들의 수입규제 요청은 상당부분 완화된 상태임.

- 브라질의 수입규제조치는 주로 미국, 중국, EU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이는 섬유류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對브라질 수출품목이 전기·전자, 석유화학제품 등이어서 브라질 국내산업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베네주엘라]

- 2004년 7월 현재 신발류에 대해 1건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예비판정내용
신발류	6402.20	'02.9.23	'03. 3. 20	-	기존관세율 : 20% 인상폭 : 최대 44.58%
	6403.59	상동	상동	-	기존관세율 : 20% 인상폭 : 최대 47.06%

[이집트]

- 2004년 7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1건뿐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타이어	4011.10, 4011.20	'98. 9월	'99.7.8	'99.10.10	반덤핑 관세 (5.5%~17%)

- 이집트는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규제 조치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집트 정부는 국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철근, 전구 타이어 등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산발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우리의 주된 수출 품목인 기계, 자동차, 화학, 전자제품 등은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으로 간주하여,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남아공]

□ 2004년 7월 현재 9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04년에 상반기에 신규 제소된 품목은 없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석유화학 3건, 섬유류 1건, 전기·전자 1건, 기타 2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조사개시일	예비판정일 및 내용	최종판정일 및 내용
스텐레스 주방용기	'97.11.20	- '98.4.22 - 동원금속 : 무혐의 - 여타 6개사 : kg당 23.94 ~ 27.28란드 잠정관세	'98.10.21 예비판정과 동일
아크릴 담요	'98.4.28	- '98.12.18 - kg당 11.5란드 잠정관세	'99.6.18 kg당 5.76란드로 하향조정
스텐레스 용접관	'98.7.31	- '98.12.18 - LG금속 무혐의 - 여타업체가 수출할 경우 47.6% 잠정관세	'99.6.18 예비판정과 동일
카본 블랙	'98.8.21	- '99.2.5 - 40% 잠정관세부과	'99.9.10 예비판정과 동일
스텐레스 싱크대	'98.9.4	- '99.6.18 - 384.13% 잠정관세	'99.12.17 예비판정과 동일
광케이블	'98.10.2	- '99.8.20 - 잠정관세 부과면제	2000.3.31 반덤핑관세(49.9%)
과산화수소	'99.5.28	- '99.8.27 - 한솔화학 : 147% - 동양화학 : 167%	2000.3.3 예비판정과 동일

품 목	조사개시일	예비판정일 및 내용	최종판정일 및 내용
Suspension PVC	2000.3.27	- 2000.12.15 - 42.31% 잠정관세	2001.6.15 예비판정과 동일
연선, 로프, 케이블	2000.9.13	- 2002.02.08 - 10.4% 잠정관세	2002.8.28 예비판정과 동일

☐ 스텐레스 스틸 용접관에 대한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관세율 : 47.6%) 부과 기간을 5년 연장기로 잠정 결정

- 남아공 무역규제 기관인 ITAC 측에 따르면, 한국 관련 업체들이 설문서 회신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이 이와 같은 결정의 주요 원인이라고 함.

[뉴질랜드]

☐ 2004년 7월 현재 냉장고와 세탁기 등 2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최종판정
냉장고	8418.10 등	반덤핑	'01. 6. 10
세탁기	8450.11	반덤핑	'01. 6. 10

☐ 2001. 6월 이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규제 조치는 없었으나, 2003. 4월 뉴질랜드 가전 업체인 “Fisher & Paykel”이 LG 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Fisher & Paykel”은 LG전자가 미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세탁기에 자사 특허품인 SmartDrive 기술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농·목축업 위주의 1차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조업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해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입규제 조치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호 주]

- 2004년 7월 현재 10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5건, 철강 4건, 전기·전자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EPS	3903.11	반덤핑	'92. 1	'92. 11	'97. 1월 재심 '02. 9월 재심
PVC	3919.90	반덤핑	'99. 4	'00. 3	-
동관	7411.10	반덤핑	'00. 10	'01. 4	-
Polyols	3907.02	반덤핑	'01. 4	'02. 4	-
열연형강	7216 일부	반덤핑	'01. 11	'02. 7	-
세탁기	8450.11 8450.20	반덤핑	'02. 7	'03. 9	-
HDPE	3901.20	반덤핑	'02. 10	'03. 12	-
LLDPE	3901.10	반덤핑	'02. 10	'03. 12	-
열연강관	7208.51 7208.52	반덤핑	'03. 8	'04. 4	-
ERW강관	7305 7306	반덤핑	'04. 3	-	-

- 2003년 12월 말을 기해 한국산 PS Resin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기한이 종료되어, 동 품목은 2004년부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2004년도 상반기에 한국산 ERW강관(Electric Resistance Welded Circular Hollow Section of Iron & Steel)에 대한 덤핑조사가 개시 되었으며,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 휴스틸 및 LG 상사 등이 피소업체임.
- 제조업보다 농업 및 광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는 외국의 농업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제조업 시장 개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궁지에 몰린 호주의 제조업은 덤핑제조를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 국]

- 2004년 7월 현재 對韓 반덤핑 규제는 총 19건(조사중 3건)으로, 한국은 현재 중국이 시행중인 총 27건(조사중인 것 포함)의 반덤핑 조치 중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석유화학 12건, 전기·전자 1건, 기타 4건 등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판정내용
신문용지	반덤핑	'97.11.10	'98. 7. 9	'99 .6. 3	55~78%
폴리에스테르필름	반덤핑	'99. 3.16	'99.12.29	'00. 8.25	13~46%
스텐레스냉연강판	반덤핑	'99. 6.17	'00. 4.13	'00.12.18	6~58%
염화메틸렌	반덤핑	'00.12.20	'01. 8.16	'02. 6.20	4~66%
폴리에스터단섬유	반덤핑	'01. 8. 3	'02.10.22	'03. 2. 3	2~48%
폴리에스터칩	반덤핑	'01. 8. 3	'02.10.29	'03. 2. 3	5~52%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판정내용
아크릴레이트	반덤핑	'01.10.10	'02.12. 5	'03. 4.10	2~49%
아트지(동판지)	반덤핑	'02. 2. 6	'02.11.26	'03. 8. 6	4~71%
무수프탈산(PA)	반덤핑	'02. 3. 6	'03. 1. 7	'03. 9. 6	0~66%
합성고무(SBR)	반덤핑	'02. 3.19	'03. 4.16	'03. 9. 9	7~38%
냉연강판	반덤핑	'02. 3.23	'03. 5.20	'03. 9.23	0~55%
PVC	반덤핑	'02. 3.29	'03. 5.12	'03. 9.29	6~84%
TDI	반덤핑	'02. 5.21	'03. 6.10	'03. 11.22	3~49%
페놀	반덤핑	'02. 8. 1	'03. 6. 9	'04. 2. 1	3~144%
클로로포름	반덤핑	'03. 5.30	'04. 4. 8	-	16~96%
광섬유	반덤핑	'03. 7. 1	'04. 6. 16	-	7~46%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반덤핑	'03. 12.17	-	-	-
골판지	반덤핑	'04. 3. 31	-	-	-
비스페놀 A	반덤핑	'04. 5. 12	-	-	-

□ 2004년도 상반기에 신규 제소된 우리나라 제품은 골판지, 비스페놀 A 등 총 2건임.

[2003년 對韓 신규제소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조사개시
골판지	4804.31,4804.41,4804.51 ,4805.24,4805.25	반덤핑	2004.3.31
비스페놀 A	2907.23	반덤핑	2004.5.12

- 이는 2004년 상반기 중 중국 전체 신규 수입규제 조사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제동책으로 해석할 수 있음.

[對 중국 무역수지 흑자 추이] (단위 : 백만불)

	2001	2002	2003	2004(1-5월)
對中무역수지	4,888	6,354	13,201	8,356

자료원 : KOTIS

□ 반덤핑 규제 분야, 첨단업종으로까지 확대

- 지난해 제소되어 올해 6월 16일 예비 판정이 난 광섬유의 경우, 이제 까지 화공 등 재래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주종을 이루었던 것과 는 달리 첨단 품목에 대해서도 규제가 촉발되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첨단산업 제품 육성 의지와 최근 우리나라 첨단제품의 對중국 수출이 가속화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로된 조치로 분석 가능

[일 본]

- 2004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유일함.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01.4.23	'02.7.27	덤핑마진 : 0-13.5%

- 일본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와 마이크론재팬이 지난 6월 16일 하이닉스 반도체의 D-RAM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신청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일, 해외에 공장을 갖고 있는 자국기업도 상계관세 및 반덤핑 조사 신청을 낼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함으로써, 엘피다와 마이크론 재팬이 상계관세 조사신청 자격을 갖도록 함.

- 향후 2개월 이내 조사개시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1년 이내 상계관세 부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들의 주장이 일본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산 반도체에 최대 40%의 상계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은 FTA 강화 움직임을 반영하여, 기본적으로 수입규제 완화 추세에 있으나, 전기전자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재권 및 농림수산물·축산물과 관련된 식품위생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

- 일본은 “2004년 불공정무역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일본세관에 적발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최대 공급국이며,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입는 위조품 피해의 24%가 한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며,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촉구

- 질병 발생 등을 이유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식품위생상의 이유로 인해 한국산 만두 및 만두 속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

□ 세이프가드 관련 모니터링 체제를 정비

-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일본 국내산업 피해 방지 차원에서 2단계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으며, 농림수산물이 주요 감시대상임.

- 우리나라의 경우 가지, 토마토, 피망 등을 일본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동 품목들의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일본이 세이프가드 발동과 같은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 만]

- ☐ 2004년 7월 현재 2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 1건, 시멘트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조사개시	최종판정	반덤핑 관세율
열연형 H형강	'96. 7월	'98. 12월	31.48%
Portland cement	'01. 6월	'02. 7월	110.99%~126.81%

- ☐ 강선(Uncoated Stress-Relieved Steel Wires for Pre-stressed Concrete)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2003년 12월 14일부로 종료되었으며,

- ☐ 열연형 H형강에 대한 5년간의 반덤핑 관세부과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조치 연장여부를 재검토 중

- 대만 경제부는 일단 반덤핑 관세 부과를 지속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린 상태이므로, 재정부 관세세율 위원회(財政部 關稅稅率 委員會)의 동의를 얻게 되면 하반기 중에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됨.

[인 도]

- ☐ 2004년 7월 현재 반덤핑 규제 20건(조사중 5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1건 석유화학 15건, 전기·전자 2건 섬유류 3건
- GFO, 페놀, 아세톤, ECH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조치는 지난해

모두 종결되었으며, 반덤핑 관세와는 별도로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검토중이던 NBR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조사가 종결된 상태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구분	품 목	규 제 내 역
반덤핑 규제중 (15개 품목)	NBR (Acrylnitrile Butadiene Rubber)	○ 96. 3 조사개시, 96. 12 예비판정, 97.7 최종판정, 01. 9 반덤핑 재심(유지) ○ 대상국 : 한국, 독일 ○ A/D관세 : 톤당 \$1,692.12-2,314.8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아크릴 단섬유	○ HS코드 : 5501.30, 5503.30 ○ 96. 9 제소, 97. 10 덤핑관세, 00. 4 최종 판정 ○ 대상국 : 한국, 미국, 태국 ○ 01.8월 재심(유지) ○ A/D관세 : \$0.16-0.366/kg
	SBR (합성고무)	○ 98. 4 조사개시, 99. 4 잠정관세, '99.8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일본,대만,터키,프랑스,미국,독일 ○ '03.7.30일 재심 개시 ○ A/D관세 : 0.92루피-10.57루피/kg
	Sodium Cyanide	○ 99. 3 조사개시, 99.12 잠정관세, 00.6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미국, EU, 체코 ○ A/D관세 : 톤당 68,02루피와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이
	광섬유	○ 99. 7 조사개시, 99. 11 예비판정, 00. 6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 A/D관세 : \$2.32-8.96/km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Rubber)	○ HS코드 : 4002.70 ○ 99. 8 조사개시, 00. 5 잠정관세, 00. 9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 A/D관세 : 톤당 2,418루피

반덤핑 규제중 (15개품목)	폴리에스터 필름	○ HS코드 : 3920.69 ○ 00. 3 조사개시, 00. 11 잠정관세, 01. 5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인도네시아 ○ A/D관세 : \$0.356-0.982/kg
	배터리 (LLAB)	○ HS코드 : 8507 ○ 01. 01 조사개시, 01. 4 잠정관세, 02.12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 ○ A/D관세 : \$1.904-3.930/kg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폴리에스터 단섬유	○ HS코드 : 5503.20 ○ 01. 6 조사개시, 02. 7 잠정관세, '03. 3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 A/D관세 : \$1.093-1.196/kg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POY (Partially Oriented Yarn)	○ HS코드 : 5402.42 ○ 01. 8 조사 개시, 01. 11 잠정관세, 02.9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터키 ○ A/D관세 : \$0.360-0.605/kg
	PIB (Poly Iso-Butylen)	○ HS코드 : 3902.20 ○ 01. 9 조사개시, 02. 1 잠정관세, 02.10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EU,태국,브라질,일본,싱가폴 ○ A/D관세 : 톤당 \$1,037.77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압연롤 (Forged Roll)	○ 대상품목 : HS8455.30 ○ 02.8 조사개시, 03.1 잠정관세, 03.8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 A/D관세 : 톤당 \$2,762.79-2,851.91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가성소다 Caustic Soda)	○ HS코드 : 2815.11, 2815.12 ○ 02.5 조사개시, 02.12 잠정관세, 03.9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중국 ○ A/D관세 : 톤당 \$295.27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반덤핑 규제중 (15개품목)	소듐 아황산염 (Sodium Hydrosulphite)	○ 대상품목 : HS2832.10 ○ 02.11 조사개시, 03.4 확정관세, 03.12 확정관세 ○ 제조자 : Association of Synthetic Fibre ○ 대상국 : 한국, 독일 ○ A/D관세 : 톤당 \$1,034.76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 대상품목 : HS2836.40 ○ 02.12 조사개시, 03.6 잠정관세, 04.2 확정관세 ○ 제조자 : Gujrat Alkalies & Chemical Ltd ○ 대상국 : 한국 ○ A/D관세 : 톤당 \$9.45-123.86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중 (2개품목)	염화 메틸 (Methylene chloride)	○ 대상품목 : HS2903.12 ○ 03.2 조사개시, 03.10 잠정관세 ○ 제조자 : Gujrat Alkalies & Chemical Ltd, Chemplat Sammar and S.R.F Ltd. ○ 대상국 : 한국 ○ A/D관세 : US\$22.96-154.8/MT
	폴리올 (Flexible Slabstock polyol)	○ HS code : 2836.40 ○ 02.5 조사개시, '04.1 잠정관세 ○ 제조자 : Manali Petrochemicals Ltd ○ 대상국 : 한국, 중국, 대만, 브라질 ○ A/D관세 : 톤당 US\$1,463.71과 수입품의 도착지 가격과의 차액
반덤핑 조사중 (3개품목)	Propylene Glycol	○ HS code : 2905.32 ○ 대상국 : 한국, 싱가포르, 미국, EU ○ 제조자 : Manali Petrochemicals Ltd ○ 03.8 조사개시
	PVC Paste Resin	○ HS code : 390242.110 ○ 대상국 : 한국, 사우디, 유럽 ○ 제조자 : Manali Petrochemicals Ltd ○ 03.8 조사개시
	톨루엔 (Toluene Di-Isocyanate)	○ HS code : 2929.10 ○ 대상국 : 한국, 대만, EU, 일본, 미국, ○ 제조자 : Narmada Chemature Petrochemicals Ltd ○ 03.10 조사개시

□ 2004년도 상반기 중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규제소는 없었으며, 3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종료되었음.

- 반덤핑 관세부과가 종료된 품목은 옥소알콜과 Copper Clad Laminates, 폴리스티렌 등임.

□ 인도 정부가 2005년까지 WTO에 양허한 수준까지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매년 5%씩 기본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관세장벽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수입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

- WTO 반덤핑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하반기 기준 반덤핑 조치 최다 발동 국가(조사개시기준)는 인도로서 총 33건을 기록하였음.

[인도네시아]

□ 2004년 7월 현재 5건의 반덤핑 규제(모두 조사중)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2건, 섬유류 1건, 제지류 2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제소일	진 행 상 황
무수푸틸산	2917.35	반덤핑	'02.4.22	최종판정 대기중
카본블랙	2803.00	반덤핑	'98.7.1	잠정관세 부과 (관세율: 21.36 - 53.72%)
Un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4802.52	반덤핑	'03.2.10	조사중
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4810.11	반덤핑	'03.2.10	조사중
PSF	5503.20	반덤핑	'03.6.6	조사중

- 인도네시아는 수입규제를 잘 활용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일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일부품목에 대해 덤핑혐의 조사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임.

[태 국]

- 2004년 7월 현재 3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제품 2건과 석유화학제품 1건에 대한 것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열연강판	7208등	반덤핑	'02.7월	'03.6월	반덤핑관세 (13.96%) 잠정중단('04.3.20- 9.19)
스텐레스 압연강판	7219.32 등	반덤핑	'02.11월	'03.3월	반덤핑관세(50.99%)
아질산염	2808등	반덤핑	'04. 6월	-	-

- 국제 철강가격 급등에 따라 공급부족을 우려한 태국정부가 열연강판 (HS Code : 7208, 7211)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지난 3월부터 6개월간(2004. 3. 20 - 9. 19) 잠정 중단한 상태임

- H형강의 경우 2002. 12월부터 반덤핑규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이 진행되었으나, 태국 제소업체의 제소철회로 2004. 1. 20일부로 조사가 종결됨.
- 태국 무역청은 Thai Nitrate사의 반덤핑 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6월 한국산 아질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피소업체는 동부 한농화학 등임.

[말레이시아]

- 2004년 7월 현재 총 2건의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제지류 1건, 석유화학제품 1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인쇄용지	반덤핑	'03.1.16	'03.9.26	'03.9월 최종판정 (반덤핑 관세 : 43.24%)
무수말레산	반덤핑	'04.6.11	-	-

- 2004년 6월 11일 한국산 무수말레산에 대한 조사 개시
- 말레이시아는 중간재 가공 후 완제품 수출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연평균 반덤핑·보조금 조사건수는 3건 전후에 머물고 있으며,
 - 우리나라와는 전자부품 및 철강을 수입하고, 원유와 LNG를 수출하는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상 마찰 가능성이 낮은 편임.

[러시아]

- 2004년 7월 현재 백설탕에 대해 1건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어 진행중에 있음.

품 목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백설탕	세이프가드	'04. 6월 초	-	○ 우크라이나산 백설탕이 주요타겟 ○ 늦어도 2005년 3월초까지는 최종 판정결과가 발표될 예정

[필리핀]

□ 2004년 6월 9일 부로 3년간 적용될 유리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효되었으나, 한국산 유리제품은 동조치 대상에서 제외.

- 그러나, 감시대상에서는 해제되지 않아 2006년 9월까지의 수출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

다. 2004년 상반기 수입규제 특기사항

첨단제품에 대한 선진국과의 경쟁 격화

- 2004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특징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내 첨단제품 업체에 대한 통상 공세가 강화되었다는 점임.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 제품을 상대로 한 美·日 기업의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이며, 이 외에도 하이닉스 D-RAM 반도체에 대한 일본의 상계 관세 조사 개시 등이 있음.
 - 이는, 최근 들어 세계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는 국내 첨단제품 업체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한 방편인 것으로 분석됨.
- 기존에 석유화학, 철강 등의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수입규제대상이 국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첨단산업으로까지 수입규제 대상이 확대
 - 최근 들어 국내 첨단제품 업체에서는 가격경쟁력보다는 첨단기술력을 내세워 고부가가치 첨단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 이에 대한 경계책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첨단제품 생산국들은 특허권 침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제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특허권 침해 분쟁]

- 美 램버스사와 위스콘신 대학 , 한국 전자업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 美 램버스사는 지난 4월 하이닉스반도체가 자사 D-RAM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뒤이어 美 위스콘신대학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공정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로열티를 지급해야한다는 소송을 내는 등 한국 전자업계를 상대로 하여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통상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함.

□ 일본 후지쓰는 지난 4월 삼성 SDI가 자사 PDP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도쿄 지방법원 및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수입금지제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도쿄 세관은 요청 2주 만에 수입금지 단행

- 이후, 삼성SDI와 일본 후지쓰는 크로스 라이선싱에 합의하여 이번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 이번 제소 건은 일본전자 업계가 정부와 현안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면서 수세적 국면을 만회할 수 있는 카드로서 특허관련 제소를 하였다는 것이 특징

- 한편, 일본 정부 입장에서조차 세대 주력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스플레이제품에 대해서만은 종주국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 과거 D-RAM 메모리 칩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단적인 예로 분석 가능

□ “先제소 後협상” 전략을 통한 특허 분쟁 잦아질 듯.

-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어느 정도 확대되고 난 후 특허소송을 제기했던 것과는 달리, 제소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공격적인 입장으로 선회

- 따라서, 향후 우리 전자제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

[D-RAM 상계관세 피소]

- 엘피다 메모리와 마이크론재팬, 하이닉스반도체의 D-RAM 메모리 칩에 상계관세 요구
 - 일본정부는 지난 4월 상법 개정을 통해 해외에 생산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국기업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지난 6월 16일 상기 두 업체가 하이닉스 반도체를 대상으로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였음.
 - 이와 같은 움직임은, 최근 거의 포기하는 듯 보였던 D-RAM 메모리 칩 분야에서 엘피다가 5000억엔을 투자해 세계 최대의 300mm 웨이퍼 기반의 D-RAM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 발표 후에 나온 것이어서 일본 업체가 D-RAM 분야에서도 재도약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중국,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 중국은 지난 6월 16일 미국, 일본 우리나라산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예비판정)
 - 기존의 주요 수입규제 대상품목인 화공 제품에서 벗어난 최초의 첨단제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미국이 중국산 컬러 TV를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첨단산업 제품 육성 의지와 최근 우리나라 첨단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견제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재심(Reviews)시 반덤핑 조치 기한 연장 사례 빈번

□ 국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남아공, 호주, 캐나다에서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규제조치의 재심 결과, 부과조치의 기한이 연장되는 쪽으로 판정 (2004년 상반기 중 실시)

- 이와 관련, 현행 재심 관련 규정에 대한 WTO 반덤핑 협정이 불명확하여 각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재심절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동판정의 가장 큰 이유임.

· WTO 협정상 반덤핑 조치의 부과기간은 5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데, 협정의 기본 취지와는 정반대로 미국·EU·호주를 중심으로한 반덤핑 주요 발동국들은 실제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를 종료시키는 현황임.

- 피소된 업체의 소극적인 항변 자세도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재심시 제소국의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큰 인적 물적 비용이 수반되므로 제소국으로의 수출비중이 크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피소업체가 적극적인 항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피소업체가 생산 및 판매관련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소국 조사당국은 이를 대체할 만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 덤핑마진이 과대 산정되므로, 피소업체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지게 됨.

□ 정부 및 업종별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됨.

- 향후 전개될 재심 (EU의 경우 2005년 중 만료예정인 반덤핑 조치가 6건)에 대비하여 업체 개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 및 업종별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 규범 협상을 통해서도 우리업체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재심 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개정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3. 2004년 하반기 수입규제 전망

가. 총 괄

□ 중국경기 긴축정책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이 당초 예상치보다 둔화될 전망

- 현재까지 미국 경제는 강한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고용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쌍둥이 적자 확대, 테러 위험 증대 등의 불안요인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설과 맞물려 경기 회복이 더디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의 긴축정책으로의 선회로 인해 중국 내수가 감소하여 세계경제가 동반 위축될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2004년 하반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산업 보호, 무역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등이 강화되면서, 국가간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세계 교역환경이 악화될 가능성 상존

- 2004년 하반기에는 美 대선이 개최될 예정인데, 표심을 얻기 위해 양당 진영 모두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미-중간에 무역마찰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기폭제로 한 보호주의 확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양국간의 마찰이 보복성 조치로 현실화되어 나타날 경우 한데 묶여 피소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하반기 수출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나,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5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10억 4970억 달러로 집계
-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의 지나친 확대는 내수 침체로 인한 수입부진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수입국으로부터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나. 주요국별 전망

[미 국]

- 경제 성장률이 2002년 2.1%→ 2003년 3.1%→2004 1/4분기 4.2%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동안 주춤했던 소비 및 설비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
 -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계속될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한국 등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가 불가피한 전망
 - 금리 인상 가능성 증대 및 테러 위협 증가로 인해 미국 경제 위협
 - 미국이 9.11 테러사태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금리 인하 및 재정확대를 통해서였으나, 현재와 같이 인플레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재정적자 폭이 GDP의 4.7%에 육박한 상태에서 테러 등의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미국 경제는 위협에 직면할 것임.
 - 200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통상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상존
 - 부시행정부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제조업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종종 목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시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수입규제 관련 업계의 정치적 압력에 타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케리 후보 측은 강력한 무역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연말 대선에서 케리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등, 각종 사법 활동을 통한 무역규제 증가 예상

○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 지속

- 수치상으로는 실업률이 완전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기인했다기 보다 구직활동을 단념한 소위 구직 단념자(job market dropouts) 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일부 실업문제가 심각한 산업분야는 수입규제를 전가의 보도로 사용할 수 있음.
- 특히,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 중국, 러시아로의 일자리 해외 아웃소싱이 심화되어 실업 문제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美 노동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AFL-CIO는 중국정부의 노동정책이 근로자 인권을 무시하고, 저임금의 기본이 되며, 저가 중국 상품의 주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무역제제조치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USTR에 제소하는 등 일명 “일자리 엑소더스” 현상에 대한 제재움직임을 구체화시키고 있음.

○ 철강세이프가드 철폐로 인한 대응책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등 개별 규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상반기 중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시행 건수는 총 7건으로, 전년 동기 5건보다 2건 증가하였는데,

- 동 7건 중 5건이 철강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철강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이후, 미국 내 개별 철강업체의 제소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 가능
- 품목별로는 철강, 섬유제품, 자동차 등에서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
- 철강의 경우 지난해 말 철강세이프가드 철폐로 인해 미국 업계의 제소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들어 美 섬유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섬유쿼터가 완전히 해제되는 2005년부터는 수입규제 발동이 빈번할 전망
- 美 무역대표부(USTR)는 2004. 4월 발표한 『200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외국산 차의 한국시장 접근 증가를 위한 한국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경고하였으며, 실제로 지난 3월 일부 美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슈퍼 301조를 발동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음.

[EU]

- 기존에 서유럽을 주축으로 구성된 EU15에서 동유럽 10개국이 추가된 EU25가 탄생함으로써 신규 가입한 동유럽 10개국에도 기존 EU15의 수입규제 조치가 확대 적용됨.
- 2004년 5월 1일부로 EU에 신규가입한 동유럽 10개국 중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고 있던 국가는 폴란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1건 발동) 1개국에 국한됨.
-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EU 가입과 동시에 자동 폐지되었으며, 폴란드를 포함한 신규 10개 가입국에 기존 EU15의 수입규제 조치 도입

- EU 확대에 의해 역외국에 대한 수입규제 보다는 EU에 새로 가입한 10개 가입국과의 통상정책과 절차 정비, 수입규제 적용대상 지역 확대에 따른 보상협상과 개별업체의 재심요청에 주력할 전망
- 2002년 말부터 EU 역내산업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폐지 결과로 동반 철폐되면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이 대폭 완화되었음.
 - 하반기에도 외부적 변수가 없는 한 철강제품에 대한 특별한 수입 규제 압력은 예상되지 않음.
- 하반기 중 신규로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현재까지 없으나, 2005년 중 수입규제 조치 기간 만료가 예상되는 품목이 6개에 달해 이들 품목의 재심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임.

▶ EU확대에 따른 우리기업 수입규제 관련 영향 및 대응방안 ◀

가. 영 향

- 기존 EU 15국의 對韓 수입규제조치 변동사항은 없으며, 가입 10개국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변화
 - 신규 가입국의 기존 수입규제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EU15의 기존 수입규제가 자동 대체됨. 즉, 對 가입국 수출의 경우 2004년 5월 1일부터 갑작스레 EU15국이 취하고 있던 수입규제 품목들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새로 도입되는 것임.
- 수입규제 대상 지역으로 10개 가입국이 추가됨에 따라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되는 역외국가는 EU 집행위에 피해보상 요청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수입규제 보상협상 가능하며, 현재 우리 정부도 업계로부터 보상요청 희망품목을 받아 협상 중에 있음.
 - WTO 협정은 “ 해당 품목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갖는 공급국” 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한 이해” 에 대한 문구

화된 정의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임.

- EU측에서는 이번 확대와 관련하여, “공급자”라는 의미를 당해 상품의 MFN 무역에서의 비중이 EU의 비중보다 높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국제무대에서는 “시장점유율 10%”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

○ 개별업체 차원에서의 재조사 요청 가능

- 수입규제 대상지역이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되면서, 덤핑마진을 결정하는 “국내판매가격” 및 “수출가격”이 변화되어 기존 EU 15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가 부당하므로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출입업체의 경우 EU 집행위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제로 10개 추가가입국의 수입규모가 EU 15 수입규모와 비교시, 매우 적은 규모이므로 재조사시 기존 EU15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을 것으로 EU집행위는 전망

- 신규 10개 가입국으로 수출해오던 역외수출업체의 경우, 자사가 반덤핑 조치와 상계관세 조치에 해당되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확대된 수입규제조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EU 집행위에 요청할 수 있음.

- 2004년 5월 1일 EU확대 이후, EU 집행위는 상기 2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몇몇 건에 대하여 재심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있으나, 한국업체는 전무하며, 대부분 중국 및 러시아 업체들로 구성

나. 대응 방안

- 정부가 현재 보상협상을 추진 중인 업체·품목의 경우, 보상협상 적극 추진
- 서유럽 시장에는 수출하지 않은 채 동유럽 시장에만 수출해오던 국내업체의 경우 “규제 적용대상에서의 제외” 요청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 국]

- 중국정부는 지난 5월 철강, 자동차, 시멘트,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의 과잉투자로 촉발된 경기 과열로 인해 긴축정책으로의 선회를 선포
 - 전반적인 내수 소비시장도 여전히 공급과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심리는 극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저가 상품은 구조적으로 반덤핑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
-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첨예화되어 반덤핑 등의 수입규제를 통한 보복성 조치가 확산되고 있음.
 - 최근 미국이 중국산 가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한데 이어 중국은 광섬유 업체인 미국 코닝사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는 등 양국간 보복성 조치가 확산되고 있음.
 -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치적 고려로 인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강경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하반기에 양국간 마찰은 보다 첨예화될 수 있음.
- 화공 등 재래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2004년 상반기에는 광섬유와 같은 첨단 품목에 대해서도 예비 판정을 내려 수입규제 대상에 대한 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광섬유의 경우, 미국 코닝사를 겨냥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한국 기업으로서는 앞으로 미국 기업들과 한데 묶여 반덤핑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지속적인 중국의 對韓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최근 다소 잠잠해진 무역불균형 해소 주장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어 논리 확립이 필요

- 더 나아가, 중국과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2004년도 하반기에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신규 수입규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 19건 중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것이 12건으로 가장 많음
 - 석유화학 품목은 HS Code 2단위 기준 우리나라의 對중국 3대 수출품목이며 2003년과 2004년 1-5월 중 각각 34.7%와 55.8%의 수출증가율을 보임.

[인 도]

- 인도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WTO와의 양허관세 인하 약속을 이행 중이어서 수입규제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인도의 2003/04년 회계연도 인도의 수출은 약 17%의 신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수입증가율이 이를 크게 상회한 25%에 달해, 당해기간 무역수지적자가 134억불로 크게 확대됨.
 - 특히 지난해 우리의 대인도 수출이 전년대비 106% 급증하여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16.2억불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 수출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의 가능성이 제고됨.
- 현재 인도의 수입규제는 화학, 섬유 등에 집중되고 있으나, 전자 부품 등의 여타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

- 최근 대인도 교역에서 우리제품 대부분이 폭발적인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인도 내에서 자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한국산 컬러 TV CRT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일부 현지 변호사들로부터 입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 7월 초 발표될 예정인 신정부의 정책기조가 분배 위주, 인프라 개발, 극빈층 고용 창출에 맞추어 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자가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으므로 반덤핑 등의 수입규제 조치 발동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남아공]

-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교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이므로 추가적인 對韓 수입규제 부과 가능성은 낮은 편임.
- 남아공은 인근 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블록 형성, 미국, EU 등과의 중국, 인도를 FTA 체결 우선대상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수입규제 추세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
- 그러나, 최근 란드화의 강세추이가 이어짐에 따라 남아공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영난 악화에 직면한 내수업체가 중국 및 동남아산 의류, 신발, 직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산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2003년도 하반기 중 A4 복사용지에 대한 남아공 제지업체의 제소 움직임이 있었으나 ITAC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움직임은 없다고 보고됨.

[중남미]

-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든 중남미 경제는 2004년 들어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수출증대정책에 힘입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수지 흑지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수입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는 폐소화 약세정책에 힘입어 국내시장에서 자국 상품들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별다른 수입규제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브라질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되면서 브라질산 Pet Chip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對 아르헨티나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한국산 Pet Bottle Chip도 아울러 규제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망
-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아르헨 남부 파타고니아 이남 청정지역산 쇠고기는 수입 금지를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데, 동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對韓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세에 접어들 경우 한국산 폴리에스터 수지등 여타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해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음.

<브라질>

- 브라질 역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금년 대한 무역수지 흑자액도 4월말 현재 1억 1천만불을 기록하고 있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별다른 수입규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금년 들어 수출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멕시코>

- 최근 섬유 및 의류, 신발, 가구, 완구류 부문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및 밀수품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산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동 품목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외에도, 석유화학과 플라스틱 산업 부문 및 철강부문 제조업체들이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산업 경쟁력 약화를 호소하고 있어 동 분야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가 예상됨.
- 철강 부문의 경우, 우리 제품은 주로 전자제품 및 자동차용 강판을 중심으로 수출되므로 수입규제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화학제품의 경우에는 다소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호 주]

- 호주 정부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수세에 몰린 호주 제조업체는 외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을 예의주시하며, 수입급증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덤핑 규제 조치 부과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철강·석유화학·가전제품 분야에서 호주제품과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분야에서 수입규제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현재 상황이 좋을지라도 반덤핑제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출물량을 자율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호주 기업들의 對韓 반덤핑 제소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소극적 대응도 호주기업들의 對韓 반덤핑제조를 부추기고 있음.

- 우리수출기업들은 호주시장으로의 수출물량이 적은데다가, 소송에 투입될 인력 및 비용 문제와 기업비밀누출 우려로 인해, 반덤핑 제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대신 시장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첨부

<국별 수입규제 현황표>

(2004년 6월말 현재)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 계
미 국	16(1)	1	5		22(1)
캐나다	7				7
EU	11(2)	1			12(2)
터 키	5(1)				5(1)
멕시코	2				2
아르헨티나	5(1)				5(1)
브라질	1			1	2
베네주엘라				1(1)	1(1)
이집트	1				1
남아공	9				9
뉴질랜드	2				2
호 주	10(1)				10(1)
중 국	19(5)				19(5)
일 본	1				1
대 만	2				2
인 도	20(5)				20(5)
인도네시아	5(5)				5(5)
태 국	3(1)				3(1)
말레이시아	2(1)				2(1)
러시아				1(1)	
합 계	121(23)	2	5	3(2)	131(25)

주 : ()안은 현재 조사중인 건수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2004년 6월말 현재)

국 가	철강	석유화학	섬유류	전기전자	기 타	합 계
미 국	17	3	1	1		22
캐나다	7					7
EU	2	3	2	4	1	12
터 키			5			5
멕시코			2			2
아르헨티나	2		3			5
브라질			2			2
베네주엘라					1	1
이집트					1	1
남아공	2	3	1	1	2	9
뉴질랜드				2		2
호 주	4	5		1		10
중 국	2	12		1	4	19
일 본			1			1
대 만	1				1	2
인 도	1	14	3	2		20
인도네시아		2	1		2	5
태 국	2	1				3
말레이시아		1			1	2
러시아					1	1
합 계	40	44	21	12	14	131